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전화교환실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3. 11.

동국대학교 정보처

1. 용역 개요

가. 계약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

나. 인원 : 종일 1명, 반일 2명 (총 3명) - 인력 승계 조건

다. 근무시간 : 조장(종일) - 주중 09시~18시 (법정 휴식시간 포함)
조원(반일) - 주중 08:30~13:30, 13:30~18:30 (법정 휴식시간 포함)
- 주말 근무는 실시하지 않음
- **단, 5/1(근로자의 날)은 정상근무**

라. **용역비 산출을 위한 급여조건**

1) 2023년 법정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전체 근무자 효도수당 지급 (1인당 400,000원/년)
- 전일근무자(조장)에게 직무수당 지급 (50,000원/월)
- 전체 근무자 식대보조금 지급 (1인당 50,000원/월)

2) 4대 보험 가입 필수

3)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 지급

마. 도급업무 내역

1) 전화교환원의 업무 (조장 1인 + 조원 2인)

2) 교내 문의사항 안내의 업무

3) 대표번호(3114) 전화 응대

4) 기타 상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업무

2. 근무조건

가. 동국대학교에서 근무가 불성실한 근무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용역업체는 즉시 인력을 교체투입 하며, 최상의 인력 수급을 위하여 용역업체는 동국대학교와 협의함

나. 신규 입사자의 인수인계 기간은 총 2일로 함

다. 근무자 교육

1) 입사 시 근무시간 및 휴가 등 복무 관련한 사항은 용역업체에서 사전에 교육을 실시

2) 업체는 년 4회 이상의 법정교육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 할 의무가 있음

3. 경고 및 해약

가. 용역업체는 시방내역을 충실하게 이행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동국대학교에서는 구두 및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음

나. 서면경고가 3번 이상일 경우 동국대학교는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기타

가. 업체 변경 시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나. 계약업체는 계약만료 시 해당 근무자 전원을 퇴직처리하고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충당금을 발주처에 반환하거나 후속 도급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함

5. 문의

가. 입찰 및 계약 : 구매관재팀 이재우 (02-2260-3090)

나. 시행 및 대금지급 : 정보인프라팀 배용규 (02-2260-3909)

[계약 조건]

도급인 동국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하는 전화교환원 도급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과 “을”을 각각 “당사자”라 하며, 모두를 일컬어 “양당사자”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하고 을이 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발주내역서”라 함은 본 계약상 도급업무의 일시, 장소,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을의 도급업무 수행에 기준이 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도급대금명세서”라 함은 을의 본 계약상 도급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기술한 서면을 말한다.

③ “업무수행인력”이라 함은 제7조 제1항의 도급업무 장소에서 본 계약상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종업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의무도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4조 [위임 및 하도급 제한]

①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본 계약상 도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하도급 하는 경우, 을은 자신이 갑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방법과 동일하게 제3자에게 위임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도급대금]

① 갑은 계약기간 동안 “도급대금명세서”에 따라 을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당월의 도급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갑은 익 월 10일까지 해당 도급대금을 자신의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도급대금은 도급업무의 수행, 설비의 유지 및 관리, 비밀 준수 등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일체의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이며, 갑은 을에 대하여 도급대금 이외의 어떠한 금전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단, 일시적인 도급업무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기타 도급대금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7조 [도급업무의 범위]

① 도급업무장소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전화교환실

② 도급업무범위 :

1. “갑”이 지정한 전화교환원의 업무
2. “갑”의 교내 문의사항 안내의 업무
3. “갑”의 대표번호 전화응대
4. 기타 상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업무

③ 근무시간

1. 종일 : 주중 09:00~18:00
2. 반일 : 주중 08:30~13:30, 13:30~18:30

제8조 [도급업무의 변경]

① 갑은 필요할 경우 본 계약상 도급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을 변경하거나 도급업무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그 내용을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도급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도급대금의 증감은 양당사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장비, 피복 및 소모자재]

① 본 계약상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 및 소모자재(교환기, 작업용 PC 및 관련 회선)는 갑이 제공하며 이외의 전화교환원 상주에 따른 소모품은 을이 제공한다.

② 을은 시설이 갑의 소유임을 대외적으로 명백히 하여 제3자가 당해 시설을 갑 이외의 소유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물 시용 시 준수사항]

① 을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을은 이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을은 시설을 본 계약의 목적범의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을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어떠한 법률상/사실상 권리보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시설이 갑의 소유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당해 절차의 목적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사실 및 경위를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갑이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갑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본 계약의 종료(기간의 만료에 의한 경우와 해지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다) 즉시 시설을 하자 없는 완전한 상태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의 유지, 관리 의무]

① 을은 관리사항에 관한 갑의 지침 내지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업무수행 인력이 시설물 사용에 적합한 인력임을 보증 한다

제12조 [도급업무의 수행]

을은 본 계약상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업무처리계획을 세우고 업무수행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지도, 감독, 교육하여 본 계약상 도급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대리인]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과의 연락조정업무를 수행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한다
현장대리인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
2. 본 계약상 도급업무 수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 및 조정
3. 업무수행인력에 대한 질서유지 및 기타 본 계약상 도급업무의 처리에 관한 갑의 특별 주문사항

② 갑은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를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게만 행하며 기타 업무수행 인력에 대하여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즉시 현장대리인의 성명 등 신원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처리상황의 보고]

① 을은 제11조에서 정한 업무처리계획에 따라 본 계약상 도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수시로 업무처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일 현재까지의 업무처리상황을 일지, 보고서 등의 문서 또는 구두로 신속하게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을은 제7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종별 업무일지를 갑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상 도급업무의 수행도중 사고의 위험 또는 기계의 결함 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최대한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

① 을은 업무수행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업무수행인력의 근로조건에 관한 책임
2. 업무수행인력의 쟁의행위에 관한 책임
3. 업무수행인력의 제반 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4. 업무수행인력의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
5. 업무수행인력의 개인신상에 관한 책임
6. 업무수행인력의 임명 및 통제 등 대 관청 관련 업무에 관한 책임

② 을은 갑에게 업무수행인력이 본 계약상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한다.

③ 갑은 업무수행인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본 계약상 도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당해 업무수행인력을 본 계약상 도급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의 업무수행인력이 안전, 보안, 질서유지에 관한 갑의 지침 내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당해 업무수행인력에 대하여 강제퇴거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을은 본 계약상 도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인력에게 발생한 일체의 안전/보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어떠한 명목의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을은 이러한 안전/보건 사고발생의 위험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을은 업무수행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비밀준수의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 문서, 컴퓨터파일 등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갑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스스로 지득하게 된 갑의 모든 영업정보 및 Know-how를 말하며 본 계약에 규정된 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판매, 발표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본 조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④ 을은 업무수행인력이 본 조 제2항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의 종업원이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제17조 [제3자의 사용]

을은 본 계약상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인력 이외의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을(업무수행인력을 포함한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도급업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을은 이를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갑이 을에게 하자의 존재 사실을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당해 하자로 인하여 갑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등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금에서 당해 손해배상금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폭동, 소요,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을의 도급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을은 당해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도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업무수행인력의 파업, 태업, 직장점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
2. 을의 직장폐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3. 기타 쟁의행위 내지 노사분규로 볼 수 있는 사유

제20조 [변동사항 통지의무]

양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상대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지연 또는 미 통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지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전부 책임을 진다.

1. 대표자 변경
2. 폐업 및 업종의 변경
3.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결제계좌의 변경
4. 기타 을의 중대한 변경사항

제21조 [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시정 내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내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2.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다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3.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갑 또는 갑의 도급관련 부서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인력의 파업, 태업, 직장점거 및 을의 직장폐쇄 등 본 계약의 원활한 실현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내지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2. 갑이 을이 본 계약상 도급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3. 을이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즉시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파산, 화의,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2. 주요 자산 또는 영업의 제3자에 대한 양도
3. 주요 자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결정
4. 관계당국에 의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처분

④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방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지된 날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에 발생한 양당사자의 권리(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액은 총 도급대금의[10%]로 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 도급대금이 증액된 경우 을은 갑에게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에 맞게 갱신하여야 한다.

제23조 [부속합의서]

① 양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되는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부속합의서에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동종업계의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양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끝.